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작성

Q

3월에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4월부터 일본 국내기업에서 정사원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후생 연금에 가입 절차가 완료되었더니 연금사무소에서 2년간 국민연금 보험료가 미납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학생인 기간은 국민연금이 면제될 텐데 어째서 이런 소식이 오는 걸까요?

A

국적을 불문하고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분은 20세가 된 때부터 국민연금의 피보험자가 되며, 보험료의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재학 중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는 '학생 납부특례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이었던 기간에 유예 신청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미납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험료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년을 지나지 않은 기간(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거슬러 올라가 유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촌 동사무소의 국민연금 담당 창구, 연금 사무소 또는 재학중인 학교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 연금 기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점

- 학생납부특례는 원칙으로써 신청일과 관계없이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신청일이 1월부터 3월까지인 경우는, 전년 4월부터 3월까지) 의 기간을 대상으로써 심사하므로 **연도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연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연도별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납부 기한으로부터 **2년을 지난 미납 기간에** 대해서는, **시효로 인해 납부할 수 없습니다.**
- **미납 기간**이 있는 경우, 장래 재류자격 갱신이나 영주허가신청등의 **입관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민연금 보험료 학생 납부 특례 신청에 대하여

일본연금기구

언어 :
일본어, 영어, 중국어, 힌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 인도네시아어. 태국어,미얀마어,스페인어를 포함한 15개국어、

문의처

다언어 대응 전화상담창구

일본연금기구

언어: :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네팔어